

인사위원회 규정

2024년 3월 27일



인사위원회 규정

분류번호	
주관부서	경영지원본부 기업문화실 HR팀
제·개정 이력	2021. 5. 4. 제정
	2022. 3. 29. 1차 개정
	2023. 3. 29. 2차 개정
	2024. 3. 27. 3차 개정

SK 네트워크 주식회사

차 례

- 제 1조 (목적)
- 제 2조 (기능)
- 제 3조 (구성)
- 제 4조 (위원장)
- 제 5조 (소집)
- 제 6조 (의결방법)
- 제 7조 (부의 및 심의 사항)
- 제 8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 제 9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제10조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등)
- 제11조 (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등)
- 제12조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
- 제13조 (이사 보수 심의)
- 제14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제15조 (간사조직)
- 제16조 (의사록)
- 제17조 (규정의 개정)

附 則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 대표이사 보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한 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

제5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하여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부의 및 심의 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표이사 KPI 수립, 평가 및 보상
 - 2.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
 - 3. 대표이사 해임 및/또는 선임 제안
 - 4.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추천
 - 5. 연간 이사 보수의 한도액
 - 6.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제8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 ① 간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유지하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이하 “사

외이사 후보 목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간사에 요청하여 사외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검토한 사외이사 후보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목록 상 후보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평판 조회 등을 거쳐 1차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1차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면접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내에 KPI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임기 중 대표이사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하고 보상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중 전 항에 따라 진행한 업무평가내역,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이전 30일까지 연임 여부를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연임 여부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평가 및 연임 여부 심의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등)

- ① 대표이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 등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 /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 /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진행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

- ① 간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유지하는 대표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이하 “대표이사 후보 목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간사에 요청하여 대표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목록 상 후보를 검토·평가한 후 이사회에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 보수 심의)

- ① 위원회는 이사 보수의 한도액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연간 이사 보수의 한도액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이사 보수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조직)

-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기업문화실 HR팀으로 하며, 간사는 기업문화실장이 담당한다.
-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16조 (의사록)

-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간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附 則

1.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